

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중개정조례안

▷ 본 조례안은 98년 8월 1일 광주광역시 서구청장으로부터 제출되어 동년 8월 27일 당 위원회에 회부되었음.

■ 제안사유

○ 건설 및 임대사업자 등이 5세대 이상을 임대목적으로 직접 사용하는 경우의 공동주택에 대한 지방세 감면을 확대·실시함으로써 이들 사업자들에 대한 지방세제 혜택 및 최근 IMF로 인하여 침체 되어 있는 건설 및 주택경기를 활성화할 필요성이 있음.

■ 주요골자

○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(안 제13조)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임대목적의 공동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(100분의 50) 대상을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로 확대 실시.

■ 관련근거

○ 구세 감면조례 표준안 : 광주광역시 세정 13400-727 ('98. 5. 29)

■ 검토의견

○ 제13조 임대주택에 대한 감면내용 중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주택용에 직접사용 하는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인 5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용 부동산 (APT, 연립주택, 다세대주택) 및 그 부속토지에 대한 재산세를 지방세법 제188조의 규정에 의하여 산출된 세액의 100분의 50을 경감한다는 내용 중 제2항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를 85제곱미터 이하로 상향 조정한 것은 지역발전과 침체된 주택경기에 다소나마 지원하기 위한 것으로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.